

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1. 개정이유

2003. 7. 1일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되어 새로운 업무분장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정정하여 지정코자 함.

2. 관계법령

○ 노인복지법 제4조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함.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건은

○ 지난 2003. 7. 1 개정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직제에 맞게 업무분장을 조정한 일련의 조치사항임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.